

點檢業務改善 懇談會開催

지난 4월 23일 방재연구부 주최로 본부 각부서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행 안전점검업무상의 제반 문제점 해결과 보다 나은 점검방향의 모색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 내용이 점검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그 회의록전문을 소개한다.

1. 主 題 : 소방 검사 제도 변화, 소방관서의 방재시설 완화적용등 안전점검업무상의 현안 문제점 검토 및 점검방향 모색.

2. 日 時 : 1981. 4. 23. 14:30~ 17:00

3. 場 所 : 4층 소회의실

4. 參席者 :

○ 김희형, 정대춘, 박봉현, 이경구, 김병효, 윤원중, 한광수, 오세중,
정시철, 권홍준, 이한연, 나재수, 박현식, 박병운(14명)

○ 사 회 : 방재연구부 김병효 차장

5. 회의록 : 本文參照

사 회 : 소방법 6조의 폐지와 내무부 훈령 660호가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재단대상건물의 소방검사 생략, 부산시 소방본부의 대폭적인 소방시설기준완화 적용 등 일련의 조치와 함께 80년도 소유주 초청 간담회 결과 개수 곤란한 상황에 대한 계속지적으로 인한 문제등으로부터 야기될 안전점검업무 수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안전 점검 방향의 지표로 삼고자 하오니 기탄 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점검 1부 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윤원중 : 앞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점검방향에 대하여 검토되었으면 하며 협회 장립 이래 일관성있게 점검을 실시하여 왔다고 할 수가 있으나 이제는 점검의 방향을 바꿀 시기인것 같습니다. 현행 관계 법규위주의 안전점검으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위험조사를 특수건물에도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하여 부모물건의 화재예방을 위한 민간 단체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업무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이 시간으로는 부족하므로 간담회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 회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점검 2부 실무자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홍준 : 현안 문제에 대한 점검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하는것은 어려운 문제로 생각됩니다. 법 6조 폐지에 따른 훈령 610호 개정 작업에 대한 내무부와 협의가 시급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면서 앞으로의 안전점검의 방향을 함께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방법 6조 폐지와 관련하여 협회는 어떠한 구체적인 접촉을 내무부의 가지고 있습니까?

사 회 :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어려운 실정이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무부가 610호를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의 큰 변동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 평소 느낀 점으로 협회 안전 점검이 서비스 정신에 이긋나 건물에 깊이 개입하여 건물의 고민이나 문제점을 우리가 들춰내어 등에 업고있는 느낌이며 이것은 좋은 의미로는 적극적인 화재예방 활동으로서 개수효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으나, 나쁜 의미로는 결과적으로 건물의 문제점을 소방관서에 등보하게 됨으로써 민원이 되어 소유주가 고마와 하기 보다는 오히려 나쁜 의미로 받아 들이게 되므로 6조 폐지 660호 시행 등 차제에 점검결과를 소유주에게만 등보하여 자율소방 점검의 활용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특별법에서 정한 화재예방 활동으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현식 : 지금까지 협회가 소방관의 기량에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소방법에서 이제 자체의 감사 능력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한 조치로 귀결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 점검방향은 특별법의 점검취지대로 보험측면으로 전환하여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되며 또 개수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체방안이나 문제점을 행정판서 보다는 더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으로 완화 시행을 못하고 있는 중에 부

산시에서와 같이 행정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하려는 것 같으며 소유주에게서도 상당한 호응을 받을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전점검도 소유주를 위한 점검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끌고 점검방향을 보험측면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연구하는 점검으로 기본방침이 서야 하겠읍니다.

사 회 : 부산시의 소방시설 완화조치와 같이 어떤면에서는 점검방향에서 앞서가는 느낌도 드나, 불연구조 건물을 내화구조로 간주, 방재시설 적용과 같이 소방법 82조 특례조항에 의하여 근거 없이 완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으로는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확실한 완화의 근거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관이 아닌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과감히 탈피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하나 사실 어려운 일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식 : 소방시설의 완화는 현재 점검기준을 승인 받아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자체 방재연구위원회 회의 결과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점검기준에 포함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부산시의 완화조치가 무리하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소방시설의 완화결과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설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건물 기능상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배제 여부를 타당성있게 검토 결정하여야 하나 지금 이러한 타당성있는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시철 : 협회의 점검결과 관계행정관서 통보사항은 특별법상 의무 조항이 아닌것으로 생각되고 또 어떤 건물에서 어떤 시설이 대상이라고 우리가 지적하였으나 행정관서에서는 지적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어떤 시설을 소유주에게만 필요성을 통보하고 행정관서에는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점검결과나 통보가 일치하여야 하는가는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하며, 점검 방향도 보험측면의 점검으로 접근시켜 적발위주의 점검형태보다는 보험료할인제도 등으로써 자발적인 개선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면 돌파구가 생긴것 입니다.

한광수 : 협회가 법을 행정화 하는 기관이 아니면서 결과적으로는 법으로서 모든 것을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법을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완화된단계에 이르러 협회로서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며 이것은 안전점검이 애초 관계법을 기준한 점검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또한 특별점검 결과가 행정명령화 됨으로써 거부반응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위험조사에도 지장을 초래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수건물에서도 혼령660호의 소방검사 자율대상 선정으로 인하여 점검기피현상 내지 합동점검 불가능 현상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현상이 타 건물까지도 파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기준을 행정명령화 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서비스위주의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제정한다면 내부부의 승인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검기준제정이 급선부가 될 것입니다.

사 회 : 점검 1 부장님께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 안전점검이 해를 거듭해 오면서 대, 내외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감이 있습니다. 대내적으

로는 현재의 점검방식을 계속 존속한다는 것은 민원유발의 요인이 되며 한정된 테두리내에서의 반복적인 점검으로 인하여 발전이 없는 데 문제가 있고 대외적으로도 내무부에서의 이러한 조치가 협회를 의식하여 취한 조치로 생각되고 또 협회의 지금의 점검방향을 중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며, 소방감사를 자체 요원으로 해 나가려는 단체에 이관검증을 생각하며 한계점에 도달한 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서 점검방향을 보험측면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시험소 설치가 불가피하고 보험측면의 Survey 방안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등보는 건물에 개별적 통보방법 보다는 전체적인 건의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고 가장 민원유발 요인이 되는 개수 불가능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도출 검토하여 해결방안까지 관계 관서에 제시, 건의 한다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방재시설 원화적용 문제는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으나 이를 상위기관에 진의, 부득이 한 경우 현행대로 지적하되 소방서의 완화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간부들이 점검방향전환을 확고히하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인식하여 합심한다면 이러한 계기를 유효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희형 :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수불가능한 사항을 위험도에 비추어 보아 지적을 완화한다는 문제는 그 건물에 한하는 문제가 아니고 신축건물에서의 적용문제 등에 따른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내무부 등 관계 당국이나 건물소유주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안전점검이 재해 방지나 감소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료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기준이 내무부에서 법을 떠나서는 승인이 되지 않고 있어 훈령 610호에 따른 점검기준의 승인, 점검절차상의 복잡한 문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은 당연하나 특빈점검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나면 구제화 되겠지만 특수 건물 15,000여건에 대해서도 전부터 여러번 논의는 되었지만 규모에 따라 위험의 집중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안이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전점검결과 행정관서 등보어부 문제는 이에 따른 특실 즉, 행정명령화에 따른 개수효과를 가지는 것이 얼마인가, 반면 이로 인하여 사회문제, 부작용등을 비교 검토하여 방향이 결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중 개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시설의 완화타당성 여부의 진과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하나 우리가 흔히 지적야 할 최소기준이라고 하는 관제법이 제정되었던 이유와 취지에 대하여도 일일이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진발생 장소에서는 전기설비를 방폭조치하여야 하는데 어떤 성질의 분진이 어떤 기온, 습도에서 어떤 발화요인에 의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가 등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유주에게 소방시설을 하는 것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이나 화재예방은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

워야 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자료와 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방재연구부 뿐만 아니라 점검 직원의 현장을 통한 기술적으로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특별점검에서도 듣고 느낀점이지만 위험관리를 위하여 1차적으로 공장에서 어떤 시설과 공정으로 작업이 이루어 지는가에 대하여 짧은 시간내에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체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는 하나 조그만 건물에서 소화기, 피난기구등을 따지기 보다는 이러한 공정, 유형이 복잡하고 화재발생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윤원중 :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점검회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고 우리가 관계법규에 의존하고 또 건축, 화공 등 분야별로 업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서 포괄적인 엔지니어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은 어려우나 규모에 관계없이 Risk Management 위주의 1인 점검체제로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최근의 FM 자료를 보면 화재예방을 일반 건물에서는 인명 안전, 공장 건물은 재산보호에 중점을 두고 투자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방호할것 이냐를 결정하여 조언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에서의 이러한 조치의 취지가 화합정도의 점검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있고 점검결과가 사실 소방서와 협회가 갈아질 단계라면 우리의 점검 결과는 기술지도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효과의 경시 성등과 연관시켜 점검보고서에 반영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입니다.

사 회 : 대내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점검문제점을 간부들이 깊이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노력 결여되어있는 경향이 있어 상하간에 단층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러한 단층으로 문제점들이 여과되어 안일하게 되는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그리고 금년 현재 화형 안전점검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특히 간부들에게 심기 일전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했는데 점검체제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윤원중 : 점검업무자세를 staff 제도화하여 지위를 불문하고 상하가 동질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두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해결해 나가면서 힘을 집약한다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오세중 : 안전점검 결과 통보사항은 관계법규에 명시된 관계로 통보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소유주의 반감으로 점검원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방관이 우리정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Loss prevention 과 Risk Management 센터를 설치 전 기업체를 보험과 관련 서비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구 : 토의 내용이 보험위주의 점검방향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특별법의 안전점검에 대한 입법 취지가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업무인 점을 생각할 때 노골적으로 Underwriting Survey 들 개방측면으로서가 아니라 주업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입법 취지가 아닐것으로 생각 되기도 합니다.

정대춘 : 이차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립 당시의 특별법의 안전점검 입법취지가 화재예방 활동이 기본 업무였으나 당국에서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답습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며 최근 보험의 과학화와 이에 따른 위험조사 문제가 대두되고 화재예방과 보험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위험도 조사를 화원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험공사의 보험 5개년 계획에서도 위험도 조사를 협회에 위임토록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때 이는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개발시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한면 : 특별법에 의한 협회 설립 취지가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으로서 처음 관계법규 위주로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또한 그간의 감사를 통하여 더욱 법규 위주로 강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시에 관계법규를 탈피하거나 소방서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규를 기준으로 하되 특정건물의 완화가 아닌 유형별 완화적용으로 운영될 때 어느정도 민원문제가 감소될 것이며 점검방향도 보험을 위한 점검으로 대내적으로 준비하여 어느 단계에 가서 본격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 점검결과 소방관서 통보문제는 초창기 대우부 자책에서도 크게 원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또 660호의 자율소방대상물에는 동보생략등 단계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도 확실한 수관을 가지고 점검결과가 소방서에 통보되더라도 단지 참고로만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중 : 현재의 점검업무처리규정이 오래되어 현업무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고 앞으로의 점검업무 방향을 이 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수 : 최초 우리의 점검이 자체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기준하였으나 많은 모순이 나타나 떠나야 할 단계가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시급히 점검기준을 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점검원에 대한 문제로서도 법과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답변을 요구 받았을 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답변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체의 불협화음부터 없애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점검기준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대춘 :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법규 위주의 점검신시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관서의 방폐역할을 해온 감이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행정관서에서는 목적을 위하여는 법을 달리할 수도 있으나 입장이 틀리는 우리로서는 법을 고수 함으로써 오히려 이용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7년 동안의 점검효과를 측정하고 개수효과에 대한 지표를 분석, 개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관계관서에 건의 해결한다면 소유주에게 도움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점검 보고서 양식은 오히려 소방관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양식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소방설비, 방화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정도 주관적인 방향에서 소유주로 하여금 위험을 판단하여 개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는 힘당하지 않으나 관계법규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지한다는 지원

들의 만성적인 점검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사 회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토의 내용에 대하여 점검 2부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봉현 : 지금까지 대체적인 의견인 법규위주의 점검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자는 의견에는 동감 하지만 법이 필요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법의 양면적인 특성은 불가피하며 또 초창기 협회의 점검기준이 관제법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15,000여 점검 대상을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 상당히 지역적인 소수가 문제되고 있으며 자체 점검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면 모든 문제가 일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법의 근본 취지나 제정 동기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욱 더 연구 검토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가 상당히 진지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들 자주 가지고 우리의 업무 방향에 좋은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 회 :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며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하여 다음 기회에 또 구체적인 업무 방향에 대하여 토의를 가지기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조심 너도 조심
우리 모두 불조심